

Jan 2024. Issue 181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파사드 (Façade)*

생각과 현실

06 ... 2024년 변화하는 관세와 무역

최신 관세 판례 분석

10 ...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조심-2023-9)

논리로 푸는 HS 사례

13 ... 스마트한 생활! 新가전제품의 품목분류

Global Customs Insight

16 ... 새로운 비관세 장벽, 'EU의 탄소 국경세'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19 ... 한-인도 EODES 개통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21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파사드 (Façade)*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내면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채워가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외면까지도
아름다워 집니다.
”



파사드는 크고 멋진 건물의 정면(正面)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라틴어에서 시작돼 프랑스어를 거치며 유래되었습니다.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의 정면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들이 멋지고 웅장한 파사드를 갖고 있습니다. 건물의 얼굴인 파사드는 그 내부 전체를 대표하여 외부에 투영되고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기존 건물에 새로운 얼굴을 입혀 주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건물의 미디어 파사드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연말이 되며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는 손님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시작된 치장이었습니다. 해마다 오래된 건물의 외벽을 화려하게 꾸미며 진화해 갔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스토리를 입힌 디자인으로 많은 관객이 모여드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이번 달 생각과 현실은 '2024년 변화하는 관세와 무역' 입니다. 최신 관세 판례 분석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조심-2023-9)'이며, 논리로 푸는 HS 사례는 '스마트한 생활! 신가전제품의 품목분류'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 EU의 탄소 국경세'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한-인도 EODES 개통',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아름다운 외면(外面)을 마주하면 그만큼 아름답고 충실한 내면(內面)을 기대합니다. 웅장하거나 위엄있는 모습에는 두 손을 모으며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내면에 걸맞는 외면을 갖출 수 있다면 큰 행운일 것입니다. 화려한 외부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부의 아름다움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감사하며 기쁜 일이 됩니다.

2023 년을 돌아봅니다. 몸과 마음이 각각 동분서주(東奔西走)하였습니다. 태산같이 지켜 주시던 아버님을 보내 드리고 스스로가 태산인 듯 지낸 날 들이었습니다. 얼굴과 온몸에 바람을 넣어 뽕뽕하게 부풀려도 보고, 뒷집지고 팔자 걸음을 걸어도 보았습니다. 태산(太山)은 안되더라도 그럴 듯 해 보이는 소산(小山)이라도 만들어야지 하는 종종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공간이 커지고 방들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많은 방들은 비어 있습니다. 꿀벌들이 떠나고 꿀이 채워지지 않은 벌집같이 빈 공간들이 웅하니 눈에 들어옵니다. 허술한 빈 방들이 눈에 뜨일까 서둘러 가림막을 치고 파사드를 붙잡고 막아섭니다. 충실한 내부를 기대하는 분들께 민망합니다. 아름다운 외부에 기뻐하는 분들께 실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빈방 채우기! 새해에 해야할 첫번째 일입니다.

'큰 바위 얼굴(The Great Stone Face)**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입니다. "해가 누엣누엣 기우는 어느 오후, 어린 소년과 엄마가 집 문 앞에 앉아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로 시작됩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바위산을 닮은 얼굴의 위인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성장하며 기대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봅니다. "혹시 위인인가?" 그러나, 탐욕스러운 재력가, 자애로움 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유명한 장군,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는 성공한 정치가등은 큰 실망만 안겨 줍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위 사람들은 그가 바위산을 닮은 인물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세상적 욕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하며 이웃에게 사랑과 지혜를 가르치는 인물이 진정한 위인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내면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채워가면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의 외면까지도 아름다워 집니다.

건물이 커지면 그 안에 채워야 할 공간들이 많아지듯 나이 들어가고 책임감이 커지면 채워야 할 방들이 많아집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위, 학벌, 재력, 외모 등을 이루어 가는 것 이상으

로 지혜와 지식, 실력과 건강, 인간관계 등을 채워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태산은 커녕 소산을 이루어 감에도 지양해야 할 덕목입니다. 내면은 물론이고 외면까지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및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채우려 한다면 어느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9) 새해에는 좀 더 차근히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빈 방들을 충성되게 채워가겠습니다. 걸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앞서지 않고 행동도 함께 하며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파사드가 진실한 내면으로 연결되어 하나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사드. 위키백과. 2023.12.30.

**큰바위 얼굴. 나무위키. 2023.12.30.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생각과 현실

2024년 변화하는 관세와 무역

2024년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가를 중요한 해로, U자형의 느린 경제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AI (인공지능)의 전면부각, 로봇틱스,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분야가 전체 산업을 이끌면서 관련 원재료와 부품과 기술의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수 침체 속에 소비재 교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환경 속에서 2024년 한국의 관세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관세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쉬운 용어로 사용하나 실제 법적용을 위해서는 개정규정을 찾아서 정확히 확인하길 바란다.



서 영 진

부대표/관세사
wedn8@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관세법과 하위규정 개정 내용>

1. 기업심사 명칭을 관세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사제도를 보완 운영한다. (관세법 제2조 및 제110조제2항)

-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법인심사, 기획심사를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고, 기업심사는 관세조사로 법과 용어를 일치시킨다.
- 관세법 제2조에 관세조사의 일반정의를 신설하여 관세조사와 세액심사를 분리하여 명확히 한다
- 관세조사 유형에 간이조사를 추가하여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 관세행정 협력도, 성실도, 과거 관세조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해명자료를 요구, 검증하고 방문조사 기간을 축소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심사는 조사기간을 통상 120일에서 180일로 확장한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수입가격 결정방법내용, 용역(경영지원비 등)관련 지급내용, 로열티내용, 이전가격에 대한 사후보상조정내용에 대해 심사자가 파악한 후에 관세청 심사시스템에 등록을 규정화 한다.
-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실무검토회의를 매월 1회 정기 개최 및 필요 시 수시 개최하여 심사, 외환에 대한 과세 처분의 합리성과 일관성 및 과세품질을 제고한다

2. 수출입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을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의 보관을 추가한다. 세관은 글로벌기업의 이전가격의 결정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이고 있다. (관세법 제12조, 관세법시행령 제3조)

- 계약서 등 위조, 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는 현행처럼 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관세부과를 할 수 있게 개정된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 이는 당초 명의자(납세의무자)가 불복, 소송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실제 납세의무를 지는 명의대여자에게 1년에게 과세를 하여 과세권을 잃지 않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미 불복, 소송으로 명의대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상의 사실상 귀속자인 실제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4. 관세포탈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이상인자(관세포탈범)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명단공개를 할 수 있다. 즉 관세포탈범죄로 법인이나 개인이 처벌받으면 체납자가 아니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 (관세법 제116조의2 제1항)

- 이제까지는 관세포탈액이 커도 체납을 하지 않으면 위법성 정도가 높아도 명단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관세포탈범도 공개한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관세포탈범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자료요구를 세액심사 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시에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관세법 제37조의4 제1항)

6. 세액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없는 보정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 경과시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감면율을 확대 조정한다. 이는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많이 유도하여 과세관청의 경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즉 1년 내에는 20% → 30%로 감면율 확대)
- 6개월 초과 1년 이내(즉 1년 6개월 내에는 10% → 20%로 감면율 확대)
- 1년 6개월 ~2년 까지는 10% → 10%로 세분화하여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다.

7. 우회덤핑방지제도(관세법 제56조의2)를 신설하여 우회덤핑차단을 하도록 하였는데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법 제56조의2 신설)

우회덤핑이란,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선적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소사를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었다. 덤프관세조사기간은 통상 1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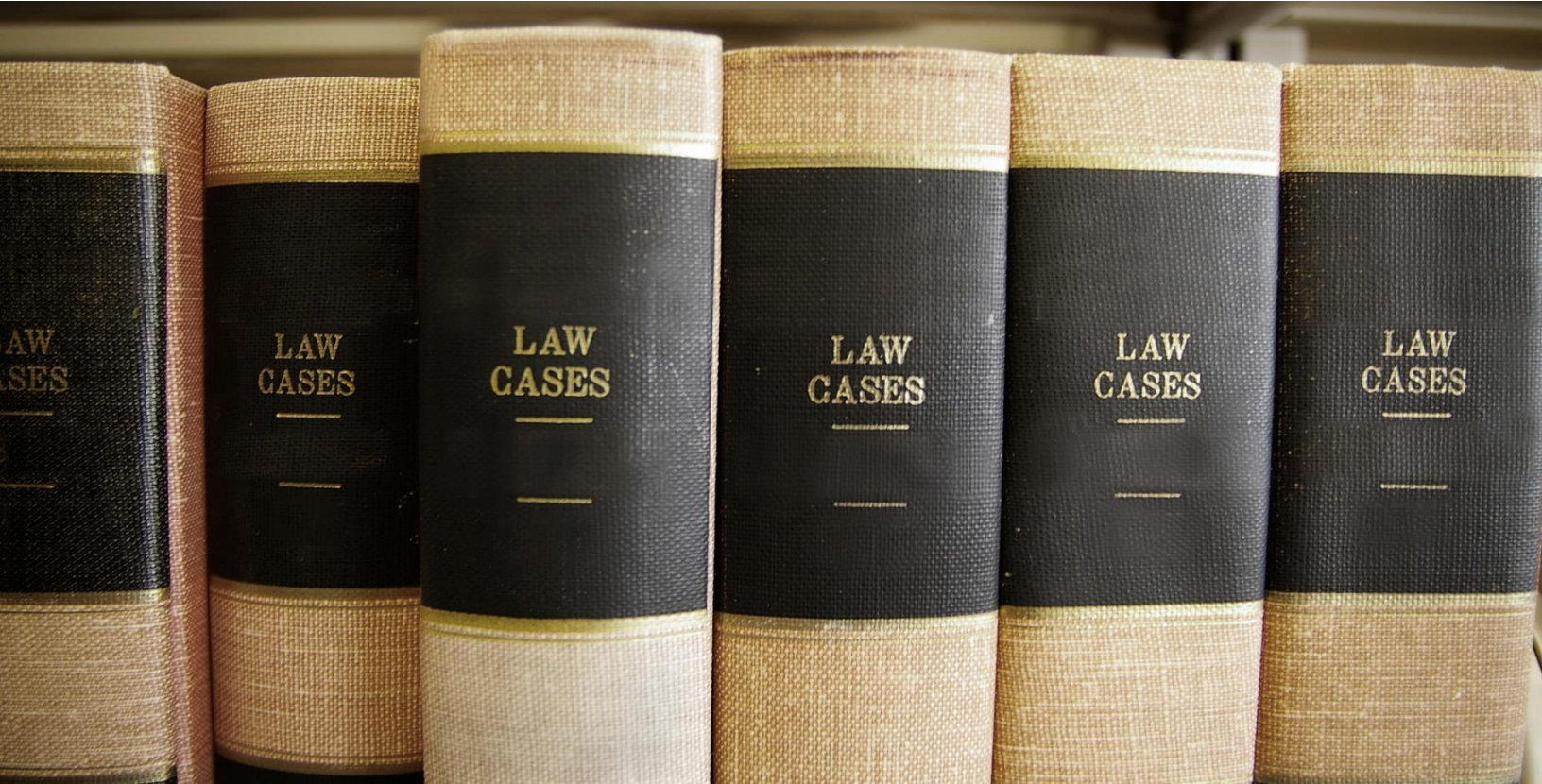
8. 특정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사전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확인서발급제도 이용)에는 낮은 관세율인 용도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관세법 제83조제1항, 제2항, 제108조제2항)

- 9.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청인의 사전심사 신청 없이 관세청장이 직접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상정하여 결정할 수도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법 제86조)

- 10.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휴대품을 반입하면 이를 유치하여납세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한다. (관세법 제206조 제1항)

- 11. 보세운송 시에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 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법 제216조, 제277조 제5항)

- 12. 세관공무원이 물품검사로 포장용기, 운반수단, 운송수단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규정이 확대되었다. (관세법 제246조의2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2)



최신 관세 판례 분석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광주세관-조심-2023-9)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①" 및 "쟁점수출자②"부터 2017.10.17.부터 2021.3.31.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으로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000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000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쟁점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김 학 현

관세사

hh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 및 생산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000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부과 면제)을 경정·고지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한-000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취지로 추가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물품①의 원산지는 000이다. 000에서 제조되어 수 출된 쟁점물품①이 한-000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 아닐 조건은 미 포장 쟁점물품① 을 000으로 수입하여 000에서 단순 재포장한 경우이다.

2) 쟁점물품 중 일부를 000으로 반송하여 수입통관할 때, 000 등 정부기관도 쟁점물품 이 000산임을 확인하였다.

3) 000 내 CCC 커피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가 쟁점물품이 000산임을 확인해 주었 다. 000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DDD는 CCC 커피 판매 권을 2018년 인수하여 000 내 판매 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수출자도 000 DDD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 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판매하고 있다.

4)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물품②의 원산지 또한 000이다. 일반적 인 사출 성형 물의 제조 프로세스는 수지 등 원재료를 호퍼에 투입하고, 가열시켜 용융상태로 만들어 금형 틀에 충전시킨 다음에 냉각·고화시켜 생산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000 FTA 제6.15조 제 3항 가목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수출자에 의 한 증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출자는 제6.17조 제1항 에 따라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와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

하여야 하며, 수입 당사국은 수출자가 제6.18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증요청에 따른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 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제 6.15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수출자 인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출자로서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자료 등' 생산정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특혜관세대우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 OOO 발행 원산지증명서,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의 생산자 확인 메일, 생산자의 홍보자료, OOO에 제출한 재수입신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OOO 내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의의]

본 건의 결정은 FTA 특혜관세율의 적용에 대한 사후조사 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자인 수출자의 관련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FTA 특혜관세율의 적용이 취소와 기본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세를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정황 상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원산지물품에 대한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은 협정 상의 의무로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 생산자 등을 통한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논리로 푸는 HS 사례

스마트한 생활! 新가전제품의 품목분류

1. 개요

“건조기는 필수다. 스타일러와 식기세척기는 있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없던 가전제품의 기술발전으로 인간의 가사노동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확보된 시간에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혁신과 편의성의 진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가전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 정 호

관세사

jhah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가전제품의 품목분류

1) 의류관리기(스타일러)와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는 입었던 의류를 내부에 수납하여 스팀, 탄소필터, 무빙 행어 등의 작용을 통해 의류의 냄새와 구김, 먼지를 제거하고 열펌프를 기반으로 건조온풍을 불어넣어 옷의 습기를 제거, 건조 처리함으로써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율표 [제 8419 호](#)에는 가열, 건조 등의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는 “원사·직물 또는 동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 또는 “직물용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전용건조기”는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류관리기는 [제 8419 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관세율표 [제 8516 호](#)에는 가정용 전열기기(electro-thermic appliances)가 분류되나, 의류관리기는 내장된 열펌프에 의한 냉매의 순환원리로 비교적 낮은 온도의 온풍을 발생하는 기기이므로 전열(electro-thermic)방식의 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제 8450 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 “이들은 보통 액체가 세탁물을 통과하여 순환하도록 패들이나 회전실린더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류관리기는 기기의 구조나 동작방법 등에 있어 세탁물을 사용하는 일반세탁기와는 다르므로 제 8450 호에 분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세율표 [제 8451 호](#)에는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수세용, 청정용 또는 건조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D) 건조기”에 대하여 “이러한 기계는 직사,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건조용으로 전문화되고 또한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외의(outer garment)용의 steaming 기구” 등을 또한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의류관리기의 주요기능은 스팀에 의한 의류의 처리기능과 건조 온풍에 의한 의류의 건조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들 기능은 모두 제 8451 호의 용어(“직물 제품의 청정 또는 건조용 기계”)를 충족하는 기능이므로 의류관리기는 제 8451 호에 분류 가능합니다.

HS 2022 년 개정 시 제 8451.80-9050 호를 신설하여 “가정용 의류관리기”가 분류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가정용 의류건조기는 제 8451.2 호에 분류됩니다.

2) 식기세척기

가정의 주방에 설치, 수관을 연결하여 식기 등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전기식의 접시세척기는 관세율표 제 8422 호에 분류됩니다.

제 8422 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HSK 제 8422.11-0000 호에 “가정형 접시세척기”를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유리잔·수저·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를 결합했는지에 상관없고, 전기 작동방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면서, “(1) 병·항아리·캔·상자·통·교유기·크림 세퍼레이터용의 볼(bowl)이나 그 밖의 용기의 청정용·세척용·세탁용이나 건조용 기계(증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이나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의 전기식의 식기세척기는 제 8422.11 호에 분류됩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새로운 비관세 장벽, 'EU의 탄소 국경세'

I. 개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과 무역정책을 결합하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무역규제조치인 '탄소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EU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국제사회 전반에서 환경 규제 및 무역 제한 조치가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탄소 국경세'를 주제로 정했다.



김정훈
관세사

jhkim@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II. 탄소무역장벽(탄소 국경세)이란?

탄소무역장벽(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쿼터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역제한 효과를 거두려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 저탄소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III. 'EU의 탄소 국경세'의 배경

- EU 집행위원회가 2021년 7월 14일 탈탄소 정책인 '유럽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 이는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며 특히 피트 포 55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가 붙는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최초이다.

IV. 영향

- 한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EU로 수출한 철강제품은 15억 2300만달러(1조 7000억원)수준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세도입에 따라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달러(약 1조 22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1.9%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EU 탄소국경세 과세 추정치**

	연평균 수입액 (억달러)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만톤)	과세금액(억달러)	관세율추정치
미국	3178.8	9837	35.41	1.1%
인도	525.9	6707	24.15	4.6%
터키	808	4429	15.95	2.0%
한국	573.1	2946	10.61	1.9%
일본	922.5	2173	7.82	0.8%
노르웨이	827.4	2027	7.3	0.9%
스위스	1270.9	1929	6.95	0.5%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 대응책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 중간재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 포장용기, 자동차 부품, 합성고무 등 14 개 품목군이 향후 10 년간 탄소 국경세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친환경 소재 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탄소 국경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동차, 선박, 기계류 등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금융지원을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기술 관련 R&D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한-인도 EODES 개통

1. 개요

2023년 12월 22일부로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개통됩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은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각국 관세 당국 간 전자방식으로 실시한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EODES가 도입되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종이원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한-인도 EODES 도입 효과

종이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국제우편과 같은 수단으로 이를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소요, 배송비용 부담,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으며, 수입국 세관에서도 원본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통관 지연이 발생합니다.



조원희

관세사

whch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컨설팅

EODES의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의 과정이 단축되어 신속 통관,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통관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와 EODES가 개통되면 통관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추후 양국 수출입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역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EODES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EODES를 개통·운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 물류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태국을 비롯한 다른 신남방국들과의 EODES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한-인도 EODES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EODES 교환시 종이 C/O는 발급받을 필요가 없나요?

A1)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C/O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2) EODES가 시행되더라도, 종전과 같은 종이 C/O로도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Q3)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기 공지된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A3) 원활한 EODES 구축·운영을 위해 인도 관세청과 공통으로 사용할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를 합의하여 게시번호 202311082287, 202311072285, 202310192272에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목적항(인도 관세청이 작성)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인도의 수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4) 한-인도 EODES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A4) '19.5월 양 관세당국이 체결한 '한-인도 CEP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양해각서(국·영문)'를 체결하였습니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외화 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정비하고,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 및 관련 영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사유

- 1)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2)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 선 응

관세사

swkim@shcs.kr

[PROFILE]

- 신한베트남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2. 주요 개정 내용

1)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개정

- 기존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정의하였고, 해당 호에 포함되는 항목을 다시 제2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하였는데, 개정안은 이 5가지 항목을 제2조 제5호에 편입하여 제5호의 가목에서 마목까지 정비하였습니다.

- **외화획득용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만 이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또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2) 용역의 범위 확대

- 기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용역의 범위를 열거(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하였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하는 용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더불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는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시행령 제2호(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이하 생략) 내용은 3호를 신설하여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본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불명확하거나 또는 범위가 모호한 항목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외화획득용 제품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간접수출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수출과 동일한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지원, 부

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에서, 국내 구매된 제품까지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 수출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외무역법 상 용역의 범위를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로 준용하여 확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 및 적용하는 데에 있어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 등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시켜 수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방향을 통해 법령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지원 제고 및 진흥을 통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국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시행 일자

미정 (입법예고)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